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규정

제정 2007.12.31 규정 제90호
개정 2013.4.15 규정 제421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
검정령, 동령시행규칙에 의거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5)

제 2 조(운영)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에 의거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하 “양성
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은 계절제(하계방학, 동계방
학)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개
정 2013.4.15)

제 3 조(설치과정 및 정원) 양성과정은 비학위 전문상
담교사양성과정으로 정원을 30명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등록·제적

제 4 조(입학시기) 양성과정의 입학시기는 방학(하게 ·

동계)초로 한다.

제 5 조(지원자격)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의한 학교의 현직교원으로서 정교사(2급) 및 보건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일 자격증에 의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전일제 강사 포함)의 경우 임명권자로부터 연수 지명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비학위과정의 모집 시점부터 이수 시점까지 기간제교사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강사, 시간제 강사는 제외).

제 6 조(입학지원 서류) 양성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최종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교원자격증 사본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 7 조(선발방법) 양성과정의 학생 선발은 면접 및 서류전형으로 한다.

제 8 조(제출서류) 양성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교육전문대학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5)

제 9 조(등록) 입학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제적)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 3 장■ 수업연한·이수과목·학점 및 수료

제11조(수업연한) 양성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이수과목) 이수과목은 공통필수과목과 선택과

목으로 하며, 이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휴업일) 법정 공휴일에는 강의를 실시하지 않 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료학점) 양성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8 학점 이상으로 하고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 및 20시간 이상의 상담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수증 수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 수증을 수여한다.

제 4 장 학업성적 평가

제16조(학업성적) 양성과정의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 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으로 평가한다.

제17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교원연수 성적처 리방법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하며 다음 표의 기준 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수 | 100 | 99 | 98 | 97 | 96 | 95 | 94 | 93 | 92 | 91 | 90 | 89 | 88 | 87 | 86 | 85 | 84 | 83 | 82 | 81 | 80 |
| 인원 | 1 | 1 | 1 | 1 | 1 | 1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 | 1 | 1 | 1 | 1 | 1 |
| 비고 | ※ 단, 30명 기준이므로 인원에 따라 조정됨 | | | | | | | | | | | | | | | | | | | | |

제18조(수료사정기준) 양성과정의 수료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수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과목당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총 이수시간의 90%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9조(운영위원회 설치) 양성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대학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4.15)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수료에 관한 사항
2. 양성과정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3. 양성과정 제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6 장 기타

제22조(표창) 교육전문대학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3.4.015)

제23조(재정) 양성과정의 재정은 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4조(수강료) 수강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이 결정한다.

제25조(수강료 반환) 양성과정은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중도탈락으로 처리하며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2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른다.(개정 2013.4.15)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수과목 및 학점

| 구 분 | 이수과목 및 학점 | 소요최저 이수학점 |
|---|--|--------------------|
| 필수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이상 (7과목 이상) |
| | 상담 실습 및 사례연구 | |
| 선택 |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 구, 청년발달, 영재아 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 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 (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 상담 | 4학점이상 (2과목 이상) |
| <p>비고: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 하나, 2종이상의 사례연구 ·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p> | | |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
| 수업개시 전 | 수강료 전액 | |
| 총수업일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
| 총수업일수의 1/3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 총수업일수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